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일부개정안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2020년에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보건복지부 소관 일몰규제에 대한 규제개혁위원회 심사결과 일몰해제 등 정비가 필요한「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」 보건복지부 고시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임.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　　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　　의 : 국무조정실과 합의되었음

라. 기　　타 : 신・구조문대비표, 별첨

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-324호

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「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일부개정안」을 다음과 같이 발령합니다.

2020년 12월 29일

보 건 복 지 부 장 관

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보건복지부 고시 일부개정안

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의 보건복지부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「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」 보건복지부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3조를 삭제한다.

부　　칙

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3조(규제의 재검토) 보건복지부장관은 「행정규제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(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)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	<삭 제>